



특집 I

對 EU 수출 증대를 위한 표준 및 인증 제도에 대한 대응전략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사무관 김종철

I. 국제적 조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의정서가 1994년 4월 15일에 최종 타결되어 이전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WTO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WTO의 출범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 및 수량 제한 대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이후 기술라운드(Technical Round)가 국제무역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장벽이란, 일정 상품의 기술규정, 임의규정 등 기술명세와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제한 장애를 말한다.

한·EU의 교역규모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무역적자폭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총 교역 규모는 1995년에는 340억 달러, 1996년에는 36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1997년에도 이에 준하는 교역규모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EU는 우리나라에게 미국, 일본 다음으로 제3위의 교역상대국이나 최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자동차 개방, 소비절약운동, 주세분쟁, 모직물, 골뱅이, 신발 및 의류 등에 대한 조정관세부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통상 현안문제들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보건, 환경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CE마크(우리의 KS마크처럼 EU역내에서

통용되는 제품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CE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EU 역내에서 출하 및 유통을 금하고 있다. 특히 EU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자제품에 대하여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CE마크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업체가 주력제품을 EU에 수출하는데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EU는 ‘유러(EURO)’화에 의한 단일통화 체제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경제통합 체제를 구축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지금처럼 수출증대가 절실한 시기에 EU의 표준 및 인증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의 강제인증제도를 개괄적이나마 정리하고 EU의 표준 및 인증제도와 이의 대응방안인 한·EU 상호 인증협정 체결에 대해 이해해 본다.

II. 우리나라의 강제인증제도의 현황

1. 강제인증제도 관련 부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이며 국립기술품질원, 전파연구소 등 산하기관 및 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파법, 전기통

신기본법, 소방법, 가스3법(고법, 액법, 도법), 해양오염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항공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선박안전법, 어선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총 40개 법령이 강제인증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3. 부처별 담당분야

- 산업자원부(전기용품, 안전검사대상공산품, 항공기, 계량기, 압력용기, 가스용품, 방폭형전기기기, 열사용기자재, 승강기부품)
- 건설교통부(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 정보통신부(전자파발생기기, 무선기기, 전기통신기자재)
- 환경부(자동차, 대기·소음·진동측정기기)
- 해양수산부(선박 및 선박용설비·용구·어선용품, 해양오염방지 설비)
- 보건복지부(의료용구, 의약품)
- 노동부(보호구,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 행정자치부(소방용기계·기구) 등

총 25개 대상분야 항공기와 자동차는 2개 부처와 중복된다.

4. EU의 CE마크 대상분야와 비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강제인증 대상분야는 CE마크 대상 17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III. EU의 표준 및 인증제도

1. EU 시장의 통합

EU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력의 분산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처해지고 특히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급격한 경제침체를 경험하자, 독자적인 단일시장을 구축하여 역내의 모든 물리적, 재정적, 기술적 장벽을 철폐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유럽지역 시장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EU는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결성하여 역내 기술장벽철폐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1968년에는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1985년에는 단일유럽법(SEA : Single European Act)과 유럽통합백서(White Paper)를 마련하였다. 특히 유럽통합백서는 EU역내의 기술적 장벽 제거를 위해 각 회원국들의 건강, 위생 및 안전, 환경보호의 규정 목적을 수렴한 총 160여개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 EU의 표준 및 인증제도의 역사

(1) 舊 접근방법

EU집행위원회가 특정제품의 모든 면에 걸쳐 강제적용되는 EU지침(Directive)을 제정하여 수많은 제품의 세부사항까지 정하는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시간적, 물리적 부담 및 기술적 문제와 규격제정시 역내 국가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구하여 규격제정이 지연되었다.

1985년 백서(White Paper)가 발간되어 유럽표준정책이 신접근방법으로 대체되게 되지만, 가공

식품, 세제 · 화장품 등의 화학제품, 의약품 등 신접근방법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된 제품의 필수요건만으로는 보건 ·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문들이나 자동차, 농업용트랙터 등 여타 실용적 목적의 부문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과거 EC가 추진하던 구접근방법과 현재의 구접근방법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바, 과거의 방식에서는 지침이 일단 제정되면 이에 관련된 개별국의 규정은 모두 폐지되어야 했으나 지금은 각자의 개별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침에 따른 제품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2) 新 접근방법

EU는 1985년 백서(White Paper)를 통해 “기술통합과 표준화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신접근방법은 기존의 회원 각국의 독자적 표준은 상호인정하고, 각국별로 차이가 큰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꼭 필요한 ‘필수요건(objectives, essential requirements)’에 관한 사항만을 EU지침에 규정하고, 세부기술사항은 CEN(유럽표준화위원회), CENELEC(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ETSI(유럽전기통신표준연구소) 등 민간표준기관에 위임한다.

신접근방법의 채택으로 CEN, CENELEC, ETSI 등에서 제정한 EN(유럽규격), HD(조화문서) 등에 적합한 제품은 EU 지침상의 필수요건을 충족 시킨 것으로 간주하여 유럽표준규격의 제정 작업이 보다 신속히 추진되게 되었다. 또한 EU의 규격제정 작업이 제품의 규격 자체보다 그 성능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규격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제조업자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혹은 일정 시장에서 판매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이와 다른 제품표준을 선호하는 경우 유럽표준을 채택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다만 유럽표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을 원하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장애가 존재하는데, 이는 타국가로의 수출시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새로이 검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 구접근방식의 결정적인 결함은 회원국이 기술장벽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규정을 채택할 경우 EC 차원에서 이를 방지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회원국이 새로운 제품규정을 채택하려 할 경우 정보통고요건을 부과함으로써, EC 집행위원회가 개별 국가가 제안한 제품규정이 새로이 기술장벽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일시적으로 규정제정을 정지시키는 “정지(standstill)원칙”을 마련하였다.

(3) 總體的 접근방법

신접근방법은 단순히 필수요건에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각 관련 지침에 규정하여, 상대국에서 발행한 검사결과 및 증명서를 기피하는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간과하여 상대국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기피현상이 적지 않은 기술장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불신은 또한 상호인정 자체를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장벽의 가능성 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전체적인 통일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어 결국 EC는 1989년 7월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총체적 접근방식”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총체적 접근방식에서는 EN45000 시리즈에 규

정된 검사 및 인증기관의 기술적 능력 및 전문성 수준에 관한 공동기준을 적용하여 EC 필수요건과의 합성검사를 책임지는 각국의 공인기관은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이러한 인정작업이 이루어지면 여타 회원국에서는 동승인기관의 증명서를 거부할 근거가 없게 된다.

또한 총체적 접근방식에서는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모듈(Module)방식”을 채택한다. 총 8가지로 분류되는 인증방법(Module)중 일부는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식과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조업자들은 한가지 이상의 인증방법을 지정함으로써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8가지 방식중 자기인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3. EU의 규격

(1) EU 규격의 종류

3가지 종류, 약 3,000여 종의 EU 규격이 있다.

1) EN(유럽규격)

ISO, IEC 등 국제표준의 채택을 원칙으로 하나,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건강, 안전, 환경보호 및 소비자보호 등 공공이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표준제정이 가능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CEN/CENELEC 가맹국의 투표를 거쳐 제정되며 회원국이 기존 국가규격을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국가수준의 유럽 통일규격(European Standard)이다. EN00000 형태로 발표된다.

2) 조화문서(Harmonized Documents, HD)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EN(유럽 규격)과 같으나, EN 규격으로의 전환기간을 유보하기 위해, 또는 가맹국의 기술, 기후풍토 등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해서 각국간의 차이점을 일시적으로 인정한 유럽규격으로 EU 각국의 법률적, 기술적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적용시에 다소 변경이 가능하다. HD 195S6=DIN/VDE0860 : 05.90(독일 규격)의 형태로 발표된다.

3) 유럽예비규격(European Pre-Standard,

ENV)

필수적인 분야는 아니나 표준의 방향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한시적인 장치로서, 각국 정부는 유럽예비표준이 유럽표준 내지 조화문서로 전환될 때까지 관련국가규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기술혁신이 진전되고 있는 분야에서 EN규격제정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적 지침으로서 발표되는 규격이며, 최대 3년 이내의 시행기간 후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잠정표준제도와 유사하다. “Per-EN○○○○”와 같은 형태로 발표된다.

제정기관	일련번호	제정방법 / 분야	비고
CEN	1~1999	CEN기술위원회(T.C)	
	2000~6999	AECMA(유럽항공기제조자협회)	
	7000~9999	(예비)	
	10000~19999	ECIIS(유럽철강표준화위원회)	
CEN	20000~39999	ISO규격 채택	20000+ISO번호
CEN/CENELEC	40000~44999	정보기술/통신	
	45000~49999	기타 공통분야	
CENELEC	50000~54999	CENELEC 기술위원회(T.C)	
	55000~55999	CISPR(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	
	56000~59999	(예비)	
	60000~69999	IEC규격 채택	
	70000~99999	(예비)	

(2) EU규격 제정기관

1,549종의 EN규격을 제정하였으며, 이중 40%는 ISO/IEC 규격에 기초를 두고 있다.

1) 유럽표준화위원회(CEN)

1957년에 설립하여 비전기분야에서의 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민간표준기관으로 유럽규격을 계획, 편집,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1994년 현재

2)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1959년에 설립하여 전기분야의 표준화활동을 담당하는 민간표준기관으로 1994년 현재 911종의

유럽규격을 제정하였으며, 이중 70%는 IEC 규격과 동일하고 17%는 IEC 규격에 기초를 둔다.

3) 유럽전기통신표준연구소(ETSI)

1988년에 설립된 민간표준기관으로 전기통신분야 표준화활동을 담당하고 1992년 현재 140종의 유럽규격을 제정하였다.

(3) EN 규격의 번호부여 방법

일련번호순으로 부여되며 EN20000~39999는 ISO 규격을, EN6000~69999는 IEC 규격을 채택한다.

4. EU의 인증제도

현행 EU의 인증제도의 기본골격은 1987년 7월에 채택된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총체적 접근방법”이다. 총체적 접근방법은 유럽지역의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고 인증방법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신축성을 보임으로써 EC 회원국에게는 상당한 제도적 개선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서는 기술규정에 관련된 EU의 인증절차와 임의 표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를 각각 나누어 고찰한다.

(1) 기술규정과 관련된 인증절차—CE마킹 제도

EU는 제품의 적합성평가방식으로 그 하나는 공인기관을 통한 “제3자 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적합성을 선언하는 “자기인증”이다.

먼저 제3자 인증의 경우 기술규정에 관련된 제품은 공인기관으로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강제적 요건에 해당하며, 다양한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준수가 의무적인 기술규정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업무는 보통 “공인기관”에서 이루어진다. 공인기관은 제3자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EU의 표준규격인 EN45000에 의거하여 공공 혹은 준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승인한 민간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자가인증은 제조업자 스스로가 제품의 강제요건 준수를 증명하는 형태로서, 이 경우 제조업자의 적합성선언 그 자체가 자가 품질보증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일반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EU는 이와 관련 국제규격에 의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을 평가하여 품질보증능력을 인정해주는 국제규격인 ISO 9000 시리즈를 유럽통합표준(EN29000)으로 대폭 채택하고 있다.

총체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8가지로 분류된 인증방법(Module)을 정하고 각 표준관련 지침에 이를 중 한 개 또는 복수의 인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동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총체적 접근방법은 많은 제품에 대해 한 개 이상의 인증방법을 지정함으로써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평가 최종단계에서 이를 증명하는 적합성인증서(receipt of a certificate)가 발행된다.

EU는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술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CE마킹”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적합성 인증서 및 CE마킹은 명확히 정의된 제품, 공정 및 서비스가 특정한 표준 혹은 여타 강제적 문서에 합치되는지의 여부가 공인된 제3자 기관에 의해 증명되는 인증절차를 만족시킨 제품에 대해 부여된다.

EU는 이러한 제3자 인증과는 별도로 제조업자 스스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조업자 적합성 선

언” 제도를 두고 있다. 제조업자는 생산과정에서 기술규정 혹은 임의표준과의 적합성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제조업자나 공공당국 그리고 민간표준기구 모두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제3자 인증절차에 비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2) 임의표준과 관련된 인증절차

임의표준의 경우 적합성평가는 강제적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품의 표준 부합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임의표준의 경우에도 적합성마크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회원국의 대표적인 표준화기구들은 영국의 BSI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시험 및 인증절차를 관장하고 있지 않으며, 일 반적으로 별도의 공인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EU에서는 비규제분야에 대한 표준 및 인증제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종래의 인증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회원국간의 편의와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의 추진을 위해 1990년 4월 유럽시험인증기구(EOTC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를 설립해 놓고 있다.

동 기구의 주요 기능은 첫째, 유럽차원의 인증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성적서와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협약의 체결을 지원하고 둘째, 임의표준 대상분야에 대한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입법활동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넷째, 역외 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정하는데 노력한다.

EU는 기술규정 및 임의표준에 있어 표준에 관한 인증시스템과 함께 최근 품질보증제도의 대폭적인 도입을 통해 관련 역내 인증시스템을 조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를 역외 국에도 확대 적용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EU에 진출하고자 하는 역외기업은 품질시스템 규격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IV. EU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 – 한·EU 상호인정 협정 체결

1.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이하 MRA)이란?

상호인정협정(MRA)이란, 각국의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협정 체약국간에 상호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적합성평가란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KS마크, ‘품’마크, Q마크 등의 제품인증, ISO 9000, ISO 14000과 같은 시스템인증 그리고 개별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인증이 있다.

그리고 상호인정이란 이러한 적합성평가, 즉 제품인증 각국 정부가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정한 규제품목들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협정체약국간에 서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인정을 양자 또는 다자형식으로 주권국가들간에 조약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을 상호인정협정 체결이라고 한다.

WTO TBT협정은 각국의 표준과 건강, 안전보호 등을 위한 강제적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자의 적합성 판정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 협상을 개시할 용의를 갖도록 장려하여 상호인정협정의 법률적 기초를 제공한다.

2. 한·EU 상호인정협정체결의 필요성

제품규격에 관한 이질적인 규제로 잠재적인 외국 경쟁자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무역 제한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수출시장에서 그 국가의 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동일한 제품의 인증을 위한 비용이 중복 지출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유효한 외국 공급자의 진입을 금지하거나, 시장의 경쟁적 환경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왜곡하게 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을 것이다.

EU의 인증제도인 CE마크제도는對 EU 수출중 34.5%가 강제인증 대상품목이다. 전자제품의 경우 CE마크 취득에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자동차의 경우 CE마크 획득에 7개월의 시간과 1억 7천만원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최근 EU의 자동차안전기준 강화 및 전자제품에 대한 CE마크제도 추가 실시로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시장확대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설자재, 압력용기, 통신단말기, 위성수신기기, 기계류, 기계장비 등 9개 제품군에 대하여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포장 및 포장폐기물 재사용·복원·수거제도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요건에 미달할 경우 1998년 1월부터

EU내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한편, 환경라벨(Eco-label)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11개 품목군(세탁기, 식기, 세척기, 화장지, 세탁제, 페인트, 복사기, 냉장고 등)에 대하여 실시 중이며, 13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규격의 무역 제한적인 효과를 저양하기 위한 노력은 세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첫째, 규격자체를 통일시키는 제품규격의 조화(harmonization of standards) 둘째, 규격이 상이하더라도 특정국의 규격에 따른 상대국의 적합성 인증을 서로 인정해주는 상호인정제도(mutual recognition) 셋째, 내·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을 없애므로써 제품기준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국민제도(national treatment) 등으로 대별되는 바, 한·EU 통상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검토해 본다.

3. 추진경위

- '90초 한·EU 통신협상시 통신단말기에 대하여 한국측 시험결과 인정요구
- '91. 5 제7차 한·EU 고위협의회에서 한국측 (공진청)에서 상호인정 협정제안
- '92. 9 EU에서 상호인정 예비회담국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 10개국 선정
- '92. 10 한·EU 고위협의회 실무회담에서 상호인정 예비회담 개최
- '93 하반기 EU는 협상대상국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10개국 선정
- '94. 10 제10차 한·EU의 각료회담에서 한국을 2차 협상대상국으로 선정요청

- '95. 5 EU 상호인증협상 조사단 방한, 예비회의 개최
- '96. 10 제12차 한·EU 각료회의시 '94년 1/4분기에 상호인정 협상개시 합의
- '97. 10 한·EU 각료회의시 상호인정 협정 체결준비의 일환으로 양측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서울과 브رات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98. 3. 26~28(3일간) 서울에서 제1차 설명회 개최
 - 7개의 분야별 설명회 및 시험·검사기관 방문
 - 7개 분야 : 자동차, 의료장비, 기계 및 전기 기기, 화장품 및 의약품, 압력용기, 화학품, 통신기기(EMC 포함)
- '98. 7월초 벨기에 브라셀에서 제2차 설명회 개최 예정

4. 기대효과

- 수출업계의 EU의 CE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 시간부담 완화
-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 EU 수출 증진
- EU의 강제인증제도 강화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처
- 우리나라의 시험·인증기관의 기술능력 향상

5. EU와 제3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현황

(1) 개요

EU는 '92. 9 상호인정협정 예비회담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

엘, 필리핀, 싱가폴, 홍콩 등 10개국을 선정하여 이중 6개국과 1차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외 벨도로 스위스, 터키 및 중동 국가들과는 경제 통합차원에서 표준의 조화 및 상호인정을 추진해 왔다.

(2) 각국별 추진현황

- 1) 미국과 상호인정협정
- '97. 6. 13 MRA 체결
- 대상분야 : 통신단말기, 전자기정합성(GMP), 전기용품 안전, 레크레이션용 소형선박, 의약품 생산관리(GMP), 의료기기 등
- 상호인정범위 : 시험성적서만 상호인정하고 인증서는 품목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협의 중
- 협정문 부속서에 시험인증기관 명시
- 협정체결 후 새로운 시험인증기관을 지정시 상대방에게 통보
- ISO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협정문에는 인정대상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관련 법규만 명시하여 동법규에 적용받는 모든 품목에 적용
- EU는 UN/ECE의 규격을, 미국은 자국의 규격을 고집

2) 호주와 상호인정협정

- '96. 7. 19 MRA 가서명
- 대상분야 : 의약품 GMP, 의료기기, 통신단말기, 전기용품안전, EMC, 기계안전, 압력용기 등 8개 분야이며, 항공기관련 제품은 협상을 계속할 것을 합의('98. 2 협정문 추가 보안)
- 상호인정범위 : 강제시험분야에서의 시험성적

서, 인증서 및 마크

3) 뉴질랜드와 상호인정협정

- 대상분야 및 상호인정범위 : 호주와 동일
 - 자동차 및 관련부품을 제외한 7개 분야와 합의

4) 카나다와 상호인정협정

- '97. 6. 10 MRA 체결
- 대상분야 및 상호인정범위 : 미국과 동일

5) 스위스와 상호인정협정

- '96. 하반기 MRA 최종타결
- 대상분야 : 19개 분야로서 EU의 CE마크 적용 분야와 거의 동일

6) 일본과 상호인정협정

- '94. 11부터 5차례 회의 결과 기본사항에 합의
- 대상품목 : 최초 10개 분야에서 Textile devices를 제외한 전기장비, 통신장비, 화학품, 의료 기기 등 4개 분야

〈각국의 상호인정협정 대상분야('98. 3 현재)〉

대상분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의료기기	○	○	○	○	○	○
의약품 GMP	○	○	○	○	○	○
통신기기	○	○	○	○	○	○
EMC	○	○	○	○	○	○
전기용품 안전	○	○	○	○	○	○
오락용 소형선박	○	○				○
압력용기			○	○	○	○
기계			○	○	○	○
자동차			○			○
신체보호구					○	○
화학품 GLP					○	○
잔디깎는 기계						○
측정기기						○
완구						○
위험화학물질 및 조제						○
건설자재						○
전기용품 폭발구조						○
가스기기						○
트랙터						○
계						○

V. 결 론

이상에서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의 법, 제도의 실태, 그리고 역내적으로는 활발한 단일 규격을 개발하여 무역장벽을 쌓는 한편, 역외적으로는 상호인정협정의 주도적 추진이라는 2중적인 정책을 펴는 EU의 표준 및 인증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인 상호인정협정에 대해서도 간략하나마 이해해 보았다.

국제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EU를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 국가들과의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은 그 시급성을 요한다. 그러나 미숙한 협상으로 인하여 협정체결에 실패할 경우, 우리의 기존 전체 메커니즘의 악평을 불러오거나, 이미 성취된 좋은 관행마저 파멸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호인정협정은 모든 협정당사국들의 능력과 성실성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신뢰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협정을 체결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단단한 기초 위에 체결된 MRA 협정은 최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관련 규격을 국제표준규격에 일치화시키고, 우리의 적합성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등 여러 국제적, 지역적 및 양자적인 민간차원의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여 우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한 실제 협상시에는 통상교섭권을 갖는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실무협상의 각 주무 부서들의 밀접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유리한 품목과 불리한 품목을 파악하고, 협정체결시 예상되는 EU측의 시장변화까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담당부서, 제조업자, 관련단체 및 시험검사기관과 충분한 정보교환 및 협조강화가 절대적으로 요망되며, 개별 품목별의 근시안적인 협상자세를 지양하고 범국가적인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